

##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◇ 행정규칙명

- 특허·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

### ◇ 제·개정 이유

- 심사업무의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정비 및 융·복합기술 분야 출원의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복수의 심사관이 협의 심사하도록 하는 심사사무의 변경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### ◇ 주요내용

- 가. 심사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관이 심사 회피할 수 있는 경우를 청출신 변리사가 대리하는 건까지 확대(제16조제2항)
  - 심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특허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청출신 변리사의 대리 건을 심사 회피할 수 있도록 사유 추가
- 나. 출원인 면담 시 심사관이 객관적 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허팀장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, 면담 사유로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(제17조제1항, 제7항)
- 다. 융·복합기술 분야 출원에 대한 더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특허팀장 중심의 3인 협의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14조, 제14조의2)
- 라. 심사 보류 사유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심사참고자료제출을 재요구하여도 출원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(제7조제1항)
- 마. 제3자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 정보제공제도가 도입되었고, 이에 따라 통지받을 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익명 제출인에게는 정보제공에 대한 활용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규정 마련(제83조)